

제314회 임시회
2012. 9. 21.(금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「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2. 9. 21(금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광진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8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9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9월 11일

(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광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명시된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도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임

나. 주요내용

- 현행 도조례 제6조 본문에 규정된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2를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일치 (안 제6조)
- 담당부서가 균형개발과에서 도로과로 변경됨에 따라 간사의 명칭을 “균형개발과장”에서 “담당부서 과장”으로 개정 (안 제15조제4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문 홍 열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과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업무주관부서인 균형건설국 도로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, 입법예고(2012. 8. 9 ~ 8. 28)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개정 내용에 반영하고 있음으로 정당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간사는 균형개발과장이 된다.”를 “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.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25인 이내의”를 “25명 이내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

제27조의2 (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)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"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"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(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·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삭제<2011.11.3>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제34조(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)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"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"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[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(직접·간접 노무비,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)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,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,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]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.